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법정 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인 ‘사업자 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함.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신설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생 략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 제1호를 삭제하고, 현행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2. 3. (생략)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삭제>

1. 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별지 제6호서식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바깥쪽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업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업종	자본금
	사업시행 예정 연월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인력·기술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서 제출 → 심의 → 지정 → 지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간 (문화재청) 처리기간 (문화재청) 처리기간 (문화재청) 처리기간 (문화재청) 처리기간 (문화재청)

210mm×297mm[직상기(80g/㎡)]

별지 제6호서식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바깥쪽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업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업종	자본금
	사업시행 예정 연월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인력·기술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2.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제출되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서 제출 → 심의 → 지정 → 지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간 (문화재청) 처리기간 (문화재청) 처리기간 (문화재청) 처리기간 (문화재청) 처리기간 (문화재청)

210mm×297mm[직상기(80g/㎡)]